

부산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나414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송인엽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정찬우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10. 20.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2. 23. 선고 2020가단20651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2019. 4. 13.경 체결된 17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91,479,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부터 2021. 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479,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부터 2021. 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91,479,45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2019. 4. 13.경 체결된 17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91,479,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부터 2021. 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479,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부터 2021. 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이 법원에서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14행 “같은,” 다음부터 제7면 8행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피고와 C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이자 약정이 없다거나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부부 사이라고 하여 금원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② 피고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2018. 3. 9. 30,000,000원, 2018. 10. 5. 30,000,000원, 2018. 10. 25. 7,000,000원, 2018. 10. 31. 8,000,000원, 2018. 12. 17. 11,000,000원, 2019. 1. 18. 10,000,000원, 2019. 3. 25. 15,000,000원 합계 111,000,000원이 지급되었다.
- ③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H 외 2필지 I건물 J호를 보증금 270,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였다가, 2018. 1. 31.경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차임을 월 1,300,000원으로 정하는 등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차액 250,000,000원(= 270,000,000원 - 20,000,000원)을 반환받아 그 중 17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④ 아래 표와 같이 D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돈이 지급되면, 같은 날 C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이 지급되는 등 C이 피고에게 위 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단위: 원]

일자	D 계좌 → C 계좌	C 계좌 → 피고 계좌
2019. 1. 2.	7,140,000	7,665,000
2019. 1. 9.	5,460,000	5,000,000
2019. 2. 9.	4,200,000	4,700,000
2019. 2. 22.	10,000,000	8,000,000
2019. 3. 4.	8,400,000	1,900,000
2019. 3. 9.	3,700,000	5,800,000

- ⑤ C이 남편인 피고로부터 위 170,000,000원 상당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이를 피고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형사처벌까지 감수한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준, 판사 안혜미, 판사 허성민